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3
----------	------

발의연월일 : 2024. 7. 26.

발 의 자 : 정준호 · 이학영 · 김현정  
조인철 · 임미애 · 윤후덕  
진성준 · 민병덕 · 양부남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제조 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 ④ (생략)</p> <p>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2. (생략)</p> <p>⑥ ~ ⑰ (생략)</p> <p>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⑩ (생략)</p> <p>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⑥ ~ ⑰ (현행과 같음)</p> <p>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p> <p>⑪ ----- ----- ----- ----- ----- ----- ----- ----- ----- ----- -----.</p>

